

(2024년 01월 01일 시행)

외부손해사정 협력업체 계약서

2024 년 11 월 01 일

당사자 :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당사자 : 106-86-30223

리카온화재해상

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70

호서대벤처타워 807호

서비스

손해사정

106-86-30223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이하 "현대손사"라 한다)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의 보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피해물에 대하여 건전하고 지속적인 손해사정업무 위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현대손사"와 "외부손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간 권익을 보호하며 상생경영을 통한 가치 증대로 수익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준수사항)

"현대손사"는 "현대해상"에게 위탁 받은 손해사정업무를 본 계약내용에 따라 "외부손사"에게 의뢰하고, "외부손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현대손사"와 상호 협력한다.

제3조(업무정의)

"외부손사"의 업무는 "현대손사"로부터 의뢰 받은 "현대해상"의 보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피해물에 대한 손해사정금액의 산정이며 손해사정금액이라 함은 "외부손사"가 보험약관, 관련 법규, 분쟁조정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결정 내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업무범위)

"외부손사"는 "현대손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의뢰 받은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현대손사"가 "외부손사"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보험사고 관련 지급보험금 손해사정
2. 보상직원의 교육

3. 기타 "현대손사"가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

② 손해사정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발생의 사실 확인 및 원인(면책 여부) 조사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3. 손해액 조사 및 과실 여부
4. 손해사정금액 산정
5. 기타 "현대손사"가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

③ "현대손사"가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외부손사"에게 위임할 경우 "현대손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손해사정 의뢰서(또는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당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외부손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손사"의 업무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물의 손해액이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외부손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손해사정보고서의 제출)

- ① "외부손사"는 "현대손사"로부터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의뢰 받은 경우 PRM시스템을 통해 3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고 업무의뢰가 완료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한 보험금 손해사정보고서를 "현대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부손사"는 손해사정보고서 원본을 "현대손사"의 관할 보상센터에 우편 송부(전자문서 포함) 한다.
- ③ "외부손사"는 손해사정보고서 스캔 파일을 본사 관리자에게 전송한다.
- ④ "외부손사"는 제2항과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수임 받은 건의 개인정보관련 문서 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지급기준)

- ① "현대손사"는 "외부손사"가 수임 업무를 완료하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

로 정한 손해사정 보수 정산 기준표에 의한 보수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보수 기준은 업무량, 위임한 업무내용, 업무범위에 따라 상호 협의할 수 있다.
- ③ 1사고에 대하여 1선임 "외부손사"가 2물건이상의 손해사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물건당 기본료만 지급할 경우에는 2물건까지는 기본료 정액을, 2물건을 초과하는 물건부터는 기본료의 50%를 적용한다.
- ④ "현대손사"는 "외부손사"의 최종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사정보수를 결정한다. 단, "현대손사"와 피보험자 및 피해자간의 보험금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최종손해사정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현대손사"는 "외부손사"의 손해사정업무의 진행 중에 소송의 제기로 중도 종결되거나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후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경우에도 최종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까지 손해사정수수료를 결정한다. 단, 최종손해사정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⑥ 위 제①항 내지 제⑤항의 보수는 "현대해상"이 지급한다.

제7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기, 종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 제8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의 종기일 24시에 종료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현대손사"와 "외부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현대손사" 또는 "외부손사"가 본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현대손사" 또는 "외부손사"가 관련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 3. "현대손사" 또는 "외부손사"가 당해 사업을 휴·폐업하거나 양도 하였을 때 (별도의 서면 통보 없이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자동 해지 된다.)

4. "현대손사"가 "외부손사"를 평가한 반기 실적이 2회 연속 D등급 이하인 경우
 5. "외부손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임 업무와 관련한 대외 민원이 분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② "현대손사" 또는 "외부손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 되었다 하더라도 "외부손사"는 계약해지일 이전 수임 건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 제4조 제2항을 신속하게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외부손사"는 "현대손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잔존물을 처분하는 등 "현대손사" 또는 "현대해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외부손사"는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본 계약은 "현대손사" 또는 "현대해상"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서면의 도달로써 해지된다.

제9조(위임기준 및 평가)

"현대손사"는 "외부손사"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내 외부손해사정업체 평가 해설서를 공지하고 반기 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① "현대손사"는 "외부손사"에 대하여 반기 별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업무 의뢰를 한다. 다만, "외부손사"의 전문분야, 인원, 지방사무실 등을 고려하여 업무 의뢰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현대손사"는 "외부손사"에 대하여 거래실적을 반기 별(연 2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및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유지 의무)

- ① "현대손사"와 "외부손사"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정보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이는 본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다.

- ② "현대손사"와 "외부손사"는 제1항 위반, 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관련법규의 준수 및 청렴의무)

"외부손사"는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뇌물이나 향응수수, 편의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제1호에 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대손사"가 "외부손사"에게 취하는 계약해지 및 손해사정업무 의뢰정지 등에 대한 제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뇌물이나 향응수수, 편의제공 등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위한 "현대손사"의 자료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한다.

제12조(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손사"는 본 계약체결 이후 3월 이내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D 등급으로 분류되며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다.
2. "외부손사"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계약서 사본을 본사 관리자에게 송부한다.

제13조(민원 관련 준수사항)

"외부손사"는 "현대손사"가 의뢰 한 손해사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보험사고차량의 소유주 및 피해자 등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불만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부손사"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

제14조(권리양도의 금지)

"현대손사"와 "외부손사"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본 계약에 의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5조(분쟁처리)

①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사항 또는 계약해석에 있어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본 계약에 관련한 분쟁 발생시 소송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에 의한다.

"현대손사"와 "외부손사"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이 계약은 2024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하며,

계약의 종료는 2025 년 04 월 30 일로 한다.

당사자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인)

당사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06-86-30223

리카운화재보험

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70

호서대벤처타워 807호

서미소

손해사정

(인)

붙임: 1. 고객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1부.

2. 보수정산기준표 1부.

3. 여비 교통비 지급기준표 1부. 끝.

[붙임 1]

고객 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현대손사"가 "외부손사"에게 업무상 제공하는 고객신용정보의 이용 범위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현대손사"가 "외부손사"에게 업무상 제공하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 ① "현대손사"가 "외부손사"에게 업무상 제공하는 고객신용정보는 본 계약에 해당하는 범위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② "외부손사"가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현대해상'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부손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외부손사"는 "현대손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신용정보를 "현대손사"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 가공해서는 안된다.

제3조 (업체관리자기준)

- ① "외부손사"는 "현대손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업체관리자"라 한다)를 제한하여야 하며, 각각에게 전용 ID부여 및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한다.
- ② "외부손사"는 업체관리자가 고객신용정보에 접근할 경우 ID부여 및 패스워드를 통해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업체관리자의 고객신용정보 접근 및 이용에 대해 기록관리를 한다.
- ③ "외부손사"는 "현대손사"의 고객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외부손사"는 "현대손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현대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각 업체관리자의 ID 및 패스워드의 공유 및 누설을 금지하며, "외부손사"는 각 업체관리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고객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용정보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4조 (고객신용정보 관리기준)

- ① "외부손사"는 "현대손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신용정보에 대해 이용 또는 보관기간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정보를 폐기하거나 "현대손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동의철회권을 행사하는 고객을 대신해 "현대손사"가 신용정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외부손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③ "외부손사"가 고객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폐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대손사"에게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현대손사"는 "외부손사"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 폐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손사"의 사무실 및 전산장비를 점검할 수 있으며 "외부손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태점검)

- ① "외부손사"는 본 약정일로부터 1월 내 "현대손사"가 지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증을 "현대손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현대손사"는 "외부손사"가 고객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손사"가 제출한 자료를 최종 확인, 검토하여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개선을 권고하거나 협력업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현대손사"는 외부손해사정 협력업체 계약 만료일 이전 "외부손사"가 계약기간동안 처리한 보험사고 건의 개인정보 관련 폐기를 확인한다.

제6조 (배상책임)

"외부손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현대해상'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외부손사"는 이에 책임을 지며, "현대손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효력발생기간)

- ① 이 약정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 약정은 2024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당사자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당사자 주소 : _____

상호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106-86-30223

리카온화재배상
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 70
호서대벤처타워 807호
서비스 손해사정



붙임 2. 보수정산기준표

손해사정 보수 기준표

구분	손해사정 금액	요율(%)	기준액(원)
1종·3종	5백만원 미만	기본료	550,000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66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1,012,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254,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87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2,882,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	4,4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5,841,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8,03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12,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21	22,22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02	30,69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91	45,65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4 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 가산	
외산 이륜차(자전거)	전국	기본료	250,000
보험사기 적발건	1종·3종 보수 기준표 적용	기본보수 × 2배	
법정 분쟁사건		기본보수 30% 할증	

붙임 3. 여비, 교통비 지급기준

여비 교통비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기준	비고
교통비	항공운임	실비(이코노미)	제주건 적용
	철도운임	KTX(특실제외)	
	버스운임	실비	고속버스 or 시외버스
	선박운임	실비(일반석)	
	자가용	유류대 및 통행료	
일비		30,000원	
숙박비		50,000원	한도내 실비지급

- 주> 1. 대한민국내 손해사정인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
여비 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실비를 정할 수 있다.
4. 여비 교통비 청구시 증빙 자료는 필히 첨부를 해야한다.
5. 같은 지역 중복 출장 시 교통비 1회 지급 제한